|  |  |  |
| --- | --- | --- |
|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시행에 관한 통지**  노사청발(勞社廳發)[2003]12호,  2003년 6월 4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청(국):  상대방 국가에서 근무하는 중한 양국 인원의 양로보험료 이중납부 의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중한 양국 정부는 2003년2월28일 각서교환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함)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2003년4월4일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협의서》가2003년 5월 23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의를 달성하였다. 중한 《협의서》는 중한 양국이 사회보험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외국주재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적 교류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쌍방이 다음 단계에서 정식 사회보험 협정을 체결하는 데 양호한 기반을 다졌다. 《협의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협의서》의 내용  (1) 양로보험료 상호면제의 적용 범위. 중국은 “기본양로보험”이고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 함)은 “국민연금”이다.  (2)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한국 중국인. 국내기업 등의 단체에서 한국의 회사 또는 기구(당해 기업의 분공사, 부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에 파견한 근무인원, 중국에 영구 주소를 두고 한국에서 임시 거주하는 자영자.  (3)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중국 한국인은 중국측 적용 인원의 조건과 동일하다.   (4)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기한. 협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모두 필요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다.  (5) 주관 기관. 중국측은 노동사회보장부이고, 한국측은 보건복지부이다.  (6) 취급기관. 중국측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이하 부 사회보험센터라 함)이고, 한국측은 국민연금관리국이다.  취급기구는 양로보험료 납부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게 《보험가입증명》(양식은 첨부 참조)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보험료징수기구에 제출한다.  2. 재한국 중국인의 《보험가입증명》 신청 절차  이미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 인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양로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보험가입증명>을 신청한다.   (1) 신청인은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보험가입증명) 신청표》 (이하 《신청표》라 함. 양식은 첨부 참조)를 기입하고 소재기업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인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없는 경우는 소재기업의 직인날인을 면제)  (2)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기입한 《신청표》 (1식2부)를 지참하고 양로보험 가입 소재지의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취급기구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표》 1부를 남겨 보관한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심사를 거쳐 직인이 날인된 《신청표》를 부 사회보험센터에 송부한다.  (4) 부 사회보험센터는 《신청표》를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보험가입증명》을 우송한다.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시에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3. 재중국 한국인의 양로보험료 면제 관리방법  (1) 재중국 한국인이 근무소재지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한국측이 지정한 취급기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중국 한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국무원 《사회보험료 징수 임시조례》와 《협의서》의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급 노동사회보장부문은 이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하며, 취급기구는 지체없이 신청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할 때에는 열심히 책임짐으로써 체납 현상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지역은 《협의서》를 집행하는 과정에 부닥친 문제를 지체없이 당 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교환각서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  3. 중한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보험가입증명》 신청표(생략)  2003年6月4日  첨부문건1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에 관한 상호 통지 교환각서**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특명 전권대사  김하중 귀하  귀하，  우리는 귀하의 금일 통지를 수령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국정부 대표가 최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에 관하여 진행한 회담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회담의 성과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다음과 같은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로 약칭)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 적  양로보험료의 이중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2조에서 지칭하는 일방 국가의 국민이 다른 일방국가의 입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양로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조건은 일방국가의 입법이 그 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제1조에서 지칭한 ‘국민’에는 다음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방국가 영토에서 해당 국가에 경영장소가 있는 고용주에게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해당 고용주에 의하여 다른 일방국가의 모회사 또는 기구(해당 고용주의 분공사, 소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에 파견되어, 해당 고용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피고용인원.  (2) 일방국가의 영토에서 영구적인 주소를 확보하고, 임시적으로 다른 일방국가에서 거주하는 자영자.  제3조 본 협의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국가’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2) ‘국민’은 일방 국가의 법률 및 법규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공민을 의미한다.  (3) ‘입법’의 의미:  1.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안 및 그 유관 법규  2.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양로보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  제4조 연수인력의 납부의무 면제  산업연수생으로 일방국가 기업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방국가 인원의 법정 양로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문제는 본 협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가 사회보험협정을 협상할 때에 해결한다.  제5조 소급조항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피고용인 및 채용인원이 본 협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본양로보험료를 결산하지 않은 문제와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 근로자 및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한국 유관기구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반환 지불문제에 대해서는 본 협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 정부가 사회보험협정을 협상할 때에 해결한다.  제6조 증명서의 발급과 행정협조  1. 일방국가의 입법이 그 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관기구는 본 협의 제2조에서 지칭하는 고용주 또는 자영자의 요구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고, 상술한 상황을 설명한다. 해당 증명서는 제2조에서 지칭하는 피고용인 또는 자가고용자가 다른 일방국가의 입법에서 정한 양로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증명이 된다.  2. 전항에서 언급한 증명서 발급 관련기구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국;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3. 전항에서 언급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구는 유관 피고용인 또는 자영자와 해당 피고용인의 고용주 및 다른 일방국가의 유관 기구에 증명서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4. 본 조 제2항에서 지칭한 기구는 직접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연락하여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제7조 사회보험협정의 체결  양국 정부는 조속히 양국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8조 기타규정  1. 본 협의는 수령 후 일방국가가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제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의 효력 발생 이전까지, 본 협의는 계속하여 유효해야 한다. 어느 일방국가가 30일 이전에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본 협의의 종지를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협의의 해석 또는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한다.  귀하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각서회답으로 상술한 조항을 확인하는 경우, 우리는 본 통지 및 귀하의 외교각서회답을 양국정부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협의는 귀하의 외교각서회답일 기준으로 임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 및 영문 통지문건은 귀하의 중문 및 영문 외교각서회답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 협의의 언어해석으로 인해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통지문건 및 본 회답문건이 양국정부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본 통지의 발생일부터 임시 적용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당가선  2003년 2월 28일 북경  첨부문서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에 관한**  **행정협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 2월 28일 상호 통지 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로 약칭)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하였다:  제1조 정의  본 협정에서의 용어는 “협의서”에서 사용한 의미와 동일하다.  제2조 보험가입증명  “협의서” 제6조 제1항에서 제시한 유관기구가 발급하는 보험가입증명에 대하여, 중국 및 한국은 각각 본 협정 첨부문건(1)과 (2)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3조 연락양식  “협의서”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국정부의 유관 기구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 중국과 한국이 각각 첨부문건(3)과 (4)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4조보험가입증명의 제출  “협의서” 제6조에 따라, 고용주 또는 자영자는 유관 기구가 기발행한 보험가입증명을 다른 일방국가의 유관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행정협조  1. “협의서”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협조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양국 유관 정부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필요한 경우, 양국의 유관기구는 상대방에게 협조해야 한다. 본국 공식언어로 서술한 양식과 기타문건은 다른 일방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한다.  제6조 적용 및 효력발생  본 협정은 “협의서” 효력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서의 종지일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효력”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본 협정은 2003년 4월 4일 북경에서 체결되고, 1식 2부로 각각 중문,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3가지 언어문건은 동등하게 인정된다. 문건 해석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모두 영문을 기준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류 욱  석 죽 명 |  | **关于执行中韩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的通知**  劳社厅发[2003]12号，  2003年6月4日  各省、自治区、直辖市劳动和社会保障厅(局)：  为确保中韩两国在对方国工作的人员避免承担双重缴纳养老保险费的义务，中韩两国政府于2003年2月28日以互换照会的形式正式签署了《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以下简称《协议》）。2003年4月4日，两国又签署了《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与大韩民国保健与福祉部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行政协定》。双方商定，《协议》于2003年5月23日正式生效。中韩《协议》对加强中韩两国在社会保险领域的友好合作，维护我驻外机构和人员的合法权益，促进人员交流和经贸发展，具有重要的政治、经济意义。同时，为下一步双方正式签署社会保险协定打下了良好的基础。为确保《协议》的执行，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协议》的内容  （一）适用相互免除缴纳养老保险费的范围。中国为“基本养老保险”；大韩民国（以下简称“韩国”）为“国民年金”。  （二）中方适用免除在韩缴纳养老保险费的人员。国内企业等单位派遣到韩国的公司或机构（包括该单位的分公司、附属公司或分支机构）的工作人员；在中国拥有永久住所，临时在韩国居留的自雇人员。  （三）韩方适用免除在中国缴纳养老保险费的人员与中方适用人员的条件类同。  （四）免除缴纳养老保险费的期限。在《协议》有效期内均可据需要予以免除。  （五）主管机关。中方为劳动和社  会保障部；韩方为保健与福祉部。  （六）经办机构。中方为劳动和社会保障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以下简称“部社保中心”）；韩方为国民年金管理局。  符合免除缴纳养老保险费条件的人员由经办机构签发《参保证明》（样式附后），由申请人向征缴机构出示。  二、中方在韩人员办理免缴养老保险费《参保证明》的程序  已在国内按规定参加基本养老保险并按时足额缴纳保险费的人员，按以下程序办理申请免除在韩缴纳养老保险费的《参保证明》：  （一）申请人填写《中韩互免养老保险缴费（参保证明）申请表》（以下简称《申请表》，样式附后），并加盖所在单位公章（以个人身份参保或无雇主人员免单位公章）。  （二）申请人或代理人持填好的《申请表》（一式二份）到参加养老保险所在地的社会保险经办机构审核。经办机构在审核无误后，加盖公章，并留存一份《申请表》备案。  （三）申请人或代理人将审核盖章的《申请表》送至部社保中心。  （四）部社保中心在收到《申请表》的5个工作日内通知申请人并向申请人寄出《参保证明》，未签发《参保证明》的也要知申请人并说明原因。  三、韩方在华人员免缴养老保险费的管理办法  （一） 韩方在华工作人员应向工作所在地社会保险征缴机构出具由韩方指定经办机构签发的《参保证明》，征缴机构可免征社会保险费。  （二）凡不能出具《参保证明》的在华韩国工作人员，征缴机构应按国务院《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及《协议》的规定，征收基本养老保险费。  以上规定自《协议》生效之日起开始执行。各级劳动和社会保障部门要高度重视此项工作，经办机构应本着如实、便捷的原则及时办理申请的有关手续，在审核时要认真负责，防止欠费现象发生。各地在执行《协议》中的问题，请及时向我部报告。  附件：  1．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的互换照会  2．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与大韩民国保健与福祉部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的行政协定  3．互免养老保险缴费《参保证明》申请表（本刊略）  二00三年六月四日  附件1  **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  **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  **协议》的互换照会**  大韩民国驻华大使馆  特命全权大使  金夏中阁下  阁下，  我谨收到阁下今日的照会，内容如下：  “我荣幸地忆及两国政府代表近来就大韩民国与中华人民共和国互免养老保险缴费一事进行的会谈。  作为上述会谈的成果，我谨代表大韩民同政府建议大韩民国政府和中华人民共和国政府达成如下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以下简称‘协议’）：  第一条　目的  为了避免双重征收养老保险费，应免除下述第二条所指一国国民根据另一国立法所应承担的法定养老保险缴费义务，条件是前一国的立法适用其本国国民。  第二条　适用对象  第一条所指的‘国民’应包括如下人员：  （一）在一国领土上正常受雇于在该国有经营场所的雇主，并被该雇主派遣到另一国某公司或机构，包括该雇主的分公司、附属公司或分支机构，并为该雇主工作的雇员。  （二）在一国领土上拥有永久住所，临时在另一国居留的自我雇佣者。  第三条　定义就本协议而言：  （一）‘国／国家’系指大韩民国或中华人民共和国。  （二）‘国民’系指根据一国的法律和法规拥有该国国籍的公民。  （三）‘立法’系指：  1、对大韩民国而言：国民年金法案及其相关法规。  2、中华人民共和国而言：基本养老保险的相关法律、法规和规章。  第四条　研修人员缴费义务的免除  关于免除作为产业研修生在一国企业工作的另一国人员法定养老保险缴费义务问题，将根据本协议第七条的规定，在韩中两国政府商谈社会保险协定时解决。  第五条 追溯条款  关于韩国在华工作雇员和受雇人员在本协议生效前的未结基本养老保险费问题和退付由在韩工作的中国雇员及在韩中国产业研修生向韩国有关机构缴纳的国民年金费问题，将根据本协议第七条的规定，在韩中两国政府商谈社会保险协定时解决。  第六条 证明书的出具和行政协助  一、如果一国立法适用于其本国国民，该国的相关机构应根据本协议第二条所指的雇主或自我雇佣者的要求开具证明，申明上述情况。该证明书应成为第二条所指雇员或自雇者免除另一围立法规定的养老保险缴费义务的证明。  二、前款提及的开具证明书的相关机构系指：  （一）对大韩民国而言：国民年金管理局；  （二）对中华人民共和国而言：劳动和社会保障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  三、前款提及的开具证明书的机构应向有关雇员或者自雇人员和该雇员的雇主以及另一国的相关机构提供证明书的副本。  四、本条第二款所指的机构应直接或通过外交途径联络协商本协议所涉及的事项。  第七条　社会保险协定的缔结  两国政府应尽最大努力尽早缔结两国政府间社会保险协定。  第八条　其他规定  一、本协议自收到后一个国家通知已完成生效所需的所有国内法律程序之日起第三十天生效。在两国政府间的社会保险协定生效之前，本协议应持续有效，除非任何一国政府提前三十天通过外交途径以书面形式通知对方终止本协议。  二、解释或实施本协议中产生的任何争议应通过外交途径协商解决。  如蒙阁下代表中华人民共和国政府复照确认以上条款，我谨建议本照会及阁下的复照共同构成两国政府间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本协议将自阁下复照之日起暂时适用。我的韩文和英文照会与阁下的中文和英文复照具有同等效力。对本协议文本的解释出现分歧，以英文文本为准。”  我谨代表中华人民共和国政府确认，阁下的照会以及本复同构成两国政府间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并自本照会发生之日起暂时适用。  顺致最崇高的敬意。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长 唐家璇  二00三年二月二十八日于北京  附件2  **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与**  **大韩民国保健与福祉部关于《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的**  **行政协定**    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与大韩民国保健与福祉部，为执行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大韩民国政府于2003年2月28日以互换照会的形式缔结的《中华人民共和国与大韩民国互免养老保险缴费临时措施协议》（以下简称“协议”），达成如下共识：  第一条　定义  本协定中的术语与“协议”中所使用的含义相同。  第二条　参保证明  对于“协议”第6条第1款中提及的由相关机构出具的参保证明，中国和韩国分别采用本协定附件（1）和（2）的格式。  第三条　联络表格  根据“协议”第6条第4款的规定．两国政府的相关机构间进行的必要沟通时，中国和韩国分别使用附件（3）和（4）的格式。  第四条　提交参保证明  根据“协议”第6条，雇主或自雇人员应将一同相关机构已出具的参保证明提交另一国的相关机构。  第五条　行政协助  1．免费提供执行“协议”所必需的行政协助，但两国相关机构达成共识的情形除外。  2．两国的相关机构在必要时应协助对方。将以本国官方语言表述的表格和其他文件翻译成另一国的官方语言或翻译成英语。  第六条　适用和生效  本协定自“协议”生效之日起生效，直至协议终止之日。  本协定将自“协议”启动之日起适用。  本协议定于2003年4月4日在北京签定，一式两份，每份均用中文、韩文和英文写成，三种文本同等作准。如果对文本的解释产生任何歧义，以英文文本为准。  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 　　 大韩民国保健与福祉部  刘 旭 石竹明 |